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3 제출년월일 : 2018. 07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·보완하여 선진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개정 :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

- 나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법률명 변경사항 반영(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)
- 다.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(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)
- 라.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6. 12. ~ 7. 2.)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선요구사항(용어정비 등) 반영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있음(추후반영)

-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의견 있었으나, 관내 옥외광고관련 종사자 또는 기금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의 성비 불균형에 따라 추후 반영

5) 조례 · 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"를 "평창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옥외광고정비기금"을 "옥외광고발전기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"을 "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"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

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옥외광고업자"를 "옥외광고업자 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 제목 "(기금의 관리·운용)"을 "(기금의 운용 및 관리)"로 하고,

같은 조 제1항 중 "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"를 "세입·세출예산외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"를 "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인을 포함한 10인"을 "1명을 포함한 10명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옥외광고정비기금"을 "기금"으로 한다. 제7조 제목 "(위원의 해촉)"을 "(위원의 위촉해제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촉"을 "위촉해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상실한"을 "잃은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통할한다"를 "총괄한다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범위 내"를 "범위"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진흥에 관한 법률 | 에서 위임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ㅣ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 다.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 제2조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정비 | 제2조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발전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기금-----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. 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1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 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 률 | -----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. ~ 6. (생략) 2. ~ 6. (현행과 같음) 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 <삭 제> 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 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

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- 1. 광고물 등의 정비
- 2. 경관개선
- 3. <u>옥외광고업자</u>에 대한 교육 및 지원
- 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
5. ·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 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 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 략)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

 1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<u><삭 제></u>
3. <u>옥외광고업자 등</u>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
<u>사항</u>
5. •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① -
 세
급·세출예산외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<u>옥</u>
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
②
- <u>1명을 포함한 10명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

- 는 <u>옥외광고정비기금</u>의 관리·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.
- 1. ~ 4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- 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
 - 4. 5. (생략)
- 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<u>통할한다</u>.
 - ② (생 략)
- 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 - ② (생략)
 -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(생 략)

- <u>기금</u>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원의 위촉해제)
<u>위촉해제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형</u>
4.•5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
총괄한다.
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
<u>1명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범위</u>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

	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	<u><삭 제></u>
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	
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」을 준	
<u>용한다.</u>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(시행 2017.7.26.)

- 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〈개정 2016.1.6.〉
 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1.6.>
 - 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 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 - 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 - 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 - 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 - 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- 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 -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1.6.>
 - 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 - 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 - 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 - 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2016.1.6.〉

[전문개정 2011.3.29.]

[제목개정 2016.1.6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470